

## 지원 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 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1.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 대상) 제 1 호부터 제 3 호에 해당하는 항목

1. (1) (제 1 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2) (제 2 호)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3. (3) (제 3 호)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2.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 대상) 제 4 호 중 라목, 마목, 바목, 자목, 파목에 해당하는 항목

1. (1) (라목) 건강보험법 제 51 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조기기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
2. (2) (마목)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3. (3) (바목)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 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지원대상에 포함
4. (4) (자목)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제 23 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5. (5) (파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40 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3.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비급여 대상) 제 7 호에 해당하는 항목

1. (1) (가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2. (2) (나목)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 4. 라) 특정 질환에만 임상효과가 있고 대체진료와의 비용편차가 큰 치료

1. (1) 다빈치 로봇수술 ... 특정 질환 수술에만 임상 효과가 있고, 진료비용 편차가 크고 대체 진료 존재
2. (2) HIFU(고강도초음파집속술) ... 개복수술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없으므로 지원 제외

3. (3) 방사선 온열치료 ... 다만, 항암 치료의 경우 방사선 온열치료(분류번호 도 272, 코드 HZ272)와 병용 시 암 조직의 크기가 축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여 진행성 암환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5. **마) 기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1. (1)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급여항목도 포함)

다만, ADL 이 11 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의료최고도는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통해 확인 가능)

2. (2) 특실<sup>1)</sup> 및 1인실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치료를 위한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을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소명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1) 특실은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VIP 실을 의미(병원별 명칭 상이)

3. (3) 도수치료·증식치료·추나요법(급여적용된 추나요법은 지원 항목)

4. (4) 제증명 수수료, 보호자 식대,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등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5. (5)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

6. (6)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나 국외기관에 재의뢰한 검사비용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4 호, 2018.12.19.)의 부록「국가건강검진의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 의한 검사는 인정

7. (7)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8)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9. (9)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10.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중복지원 배제
-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 산정  
다만, 긴급복지(의료비)지원사업은 지원(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급여·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 제한 사유**

- 지급제한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 구상권
  - 제 3 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 3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 3 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 3 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